

# 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43호 2016. 3. 17(목)

## 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6-6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면제 대상 고시----- 2

## 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6-286호 하천예정지의 실효 공고 -----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# 사 천 시 공 보

제443호(2)

## 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6 - 64호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“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면제대상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6. 3. 17.

사 천 시 장

### 「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면제 대상」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허가 면제에 관하여 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형태·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사천시 관할 공유수면에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의 면제) 활어 도매·소매점영업(활어 운반차량 포함) 또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를 면제하며 이는 해안경관 보호, 해양오염 방지, 선박의 통항확보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.

1.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이하,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
2. 5인 이상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이하,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

부칙<2016. 03. 17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사 천 시 공 보

제443호(3)

## 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6 - 286호

### 하천예정지의 실효 공고

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실효하였음을 공고하며, 세부 관계 사항은 사천시 건설과(055-831-3270)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3월 17일

사 천 시 장

하천 명칭	하천 등급	하 천 구 간			하천예정지 실효면적 (㎡)	사유
		기 점	종 점	거리 (km)		
가화	국가	축동면 반응리 782-1	축동면 반응리 782-1	0.049	51	법령 개정에 따른 효력 상실
가화	국가	축동면 가산리 342	축동면 가산리 342	0.358	93	"
가화	국가	축동면 가산리 496-7	축동면 가산리 496-7	0.37	2,046	"
가화	국가	축동면 가산리 505	축동면 가산리 505	0.126	856	"
백천	지방	용현면 금문리 382-2	용현면 덕곡리 58-2	7.61	21,545	"